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식품등의 내용량·원재료 함량 등 변경내역 공개〉
■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772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식품등의 내용량·원재료 함량 등 변경내역 공개	2

I. 개요

1.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77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광희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6. 7. 6.
-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의 크기나 수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제품 가격과 포장을 그대로 두면서 내용량 등을 감소시키는 경우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없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고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변경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식품등의 내용량·원재료 함량 등 변경내역 공개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종전과 동일한 용기·포장을 유지한 채 내용량, 원재료 함량 또는 원료 함량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6조의2(변경내역 표시) ①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종전에 판매하던 용기·포장을 동일하게 유지한 채로 내용량을 변경하거나 원재료 함량 또는 원료 함량을 변경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변경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운영·통제하는 유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u><신설></u>	<u>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게시판판을 말한다)와 「식품위생법」 제49조의3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u> <u>1. 제품명</u> <u>2.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의 명칭</u> <u>3. 변경 전 내용량</u> <u>4. 변경 전 원재료 합량 또는 원료 합량</u> <u>5. 변경 후 내용량</u> <u>6. 변경 후 원재료 합량 또는 원료 합량</u> <u>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u>② 제1항에 따른 변경내역의 공개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u> 제31조(과태료)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u>3.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u>
---	---

3. (생 략) ② · ③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내역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용량을 변경하거나 원재료 함량 또는 원료 함량을 변경하는 식품등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최근 식품등의 가격과 용기·포장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내용량 등을 줄여 사실상 단위가격을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이러한 변경 사실을 쉽게 인지하기 어려워 합리적인 선택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종전에 판매하던 용기·포장을 동일하게 유지한 채 내용량 또는 원재료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변경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게시판) 및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이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변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안 제6조의2제1항은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종전에 판매하던 용기·포장을 동일하게 유지한 채 내용량, 원재료 함량 또는 원료 함량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상 “식품등”에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이 포함되나, 개정안은 이 중 어떠한 식품등의 변경내역을 공개대상으로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식품 및 축산물은 소비자가 직접 구매·섭취하는 제품으로서 내용량이나 원재료 등의 함량 변경이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반면, 기구 및 용기·포장은 내용량이나 원재료·원료 함량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고, 식품첨가물은 주로 다른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어 소비자의 구매 선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측면이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성분 및 그 함량 등에 별도의 기준·규격 및 표시체계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목적과 식품등의 종류별 특성 및 현행 표시·관리체계를 고려하여, 변경내역 공개의 적용대상이 되는 식품등의 범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서는 식품의 내용량

을 감소시킨 경우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 해당 제품의 내용량 주위에 변경 사실을 표시¹⁾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²⁾의 대상이 됨.

또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3조의2에서는 식품 및 일부 축산물 등 일정 품목의

1)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 마. 8) 식품의 내용량을 변경(감소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제품의 내용량 주위에 변경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변경 전의 내용량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단위가격(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이 상승하지 않은 경우
 - 나) 내용량 변경(감소)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 다) 이하 생략

[참고 1]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 마. 8)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제16조 관련)

I. 일반기준

12.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처분의 기준이 품목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 제조정지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의 기준이 품목류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류제조정지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II. 개별기준 1.(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등의 경우)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	법 제14조 및 제17조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15일	품목제조정지 1개월

※ 내용량 변경(감소) 관련 표시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026. 4. 3.)한 상태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II. 개별기준 개정안 1.(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등의 경우)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9) 내용량 변경(내용량이 감소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실 표시 대상 식품·축산물에 변경 사실을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제품의 내용량 주위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품목제조정지 15일	품목제조정지 1개월	품목제조정지 2개월

용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 제품 포장, 제조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 장소 등을 통하여 변경 사실을 고지³⁾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태료⁴⁾ 등의 대상이 됨.

이와 같이 식품 및 일부 축산물에 대해서는 이미 내용량 또는 용량 등의 감소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표시·고지제도와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개정안과 같이 내용량 또는 원재료 함량 등의 변경내역에 대한 별도의 공개의무를 신설하고 그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은 식품등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

3)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당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지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2(용량 등 변경 사실 미고지 행위의 금지) [별표1]의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는 소비자에게 변경 사실을 충실히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이라 한다)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인 위반 행위 유형 및 고지 방법은 [별표2]와 같다.

[참고 2]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별표1], [별표2]

4) 「소비자기본법」

제12조(거래의 적정화) ②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20조(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④ 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시정조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그 행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

II. 개별기준 1.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이상 위반
가.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1호	500	1,000

매단계까지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의 추적·원인규명 및 유통차단·회수 등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현행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 대상은 영유아식,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조제유류 및 건강기능식품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되며, 일반가공식품은 의무등록 대상이 아님.

<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

- **(목적)** 식품등을 제조, 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이력추적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식품등 선택을 위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해당 식품등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유통 차단과 회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함.
-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제49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3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 3
- **(등록 제품)** 영유아식, 건강기능식품 등 97,028품목 (2026.6.30.기준)
- **(의무 등록 대상)** 영유아식,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조제유류, 건강기능식품
- **(등록 사항)** 영업소 명칭(상호)·소재지, 제품명·식품 유형, 제품 원재료 관련 정보,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보존·보관방법 등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와 같이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은 식품안전 문제 발생 시 제품을 추적·관리하기 위해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반면, 개정안은 내용량 또는 원재료·원료 함량의 변경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그 목적과 기능에 차이가 있음.

따라서 동 시스템을 변경내역 공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기능 및 현행 운영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개정안은 내용량, 원재료 함량 또는 원료 함량의 증가·감소 여부나 변경 정도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함량이 증가하거나 변경 정도가 미미한 경우에도 공개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반면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은 내용량이 감소하더라도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거나 감소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등을 표시대상에서 제외⁵⁾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역시 단위가격의 변동 여부와 용량 등의 변동 비율 등을 기준으로 고지 대상을 정하고 있음⁶⁾.

따라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을 중심으로 공개대상의 기본적인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 등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안 제6조의2의 제목이 ‘변경내역 표시’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법 제2조제7호에서는 ‘표시⁷⁾’를 ‘식품등 및 이를 넣거나 싸는

5) [참고1]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 마. 8)

6)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별표2]

1. 위반행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

- 포장지를 변경하더라도 내용물이 동일하면 동일한 물품에 해당
- 용량 등과 가격을 함께 조정하여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변하지 않는 변경 행위는 제외
-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는 제외

7)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및 이를

것(그 안에 첨부되는 종이 등을 포함한다)에 적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안 제6조의2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변경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조문의 내용과 용어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안 제6조의2의 제목을 ‘변경내역 공개’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다. 관계기관 및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 개정안은 제품 가격과 포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량 등을 감소시키는 경우, 변경 전후 내용량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임.
- 식약처는 이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내용량 감소 시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6. 4. 3.)한 바 있음.
-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나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보 제공은 현행법상 “표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안 제6조의2의 조문 제목인 “변경내역 표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넣거나 싸는 것(그 안에 첨부되는 종이 등을 포함한다)에 적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 한국식품산업협회:

-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입법취지는 이해하나,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 및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고시에서 이미 내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고지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적인 공개의무는 현행 제도와 중복되고 영업자의 규제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음.
- 또한 원재료·원료 함량은 품질 개선, 원료 수급 및 제조공정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제품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기술정보이므로, 모든 변경내역을 공개할 경우 영업비밀 침해 및 연구개발·제품 개선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 아울러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은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제도로 변경내역 공개와 목적이 다르고, 모든 식품이 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인 것도 아니므로 현행 제도의 목적 및 적용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내용량 변경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및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등을 통해 이미 표시·고지되고 있어, 추가적인 공개의무는 현행 제도와 중복될 우려가 있음.
- 특히 원재료 함량은 원재료 수급, 품질 개선, 제조공정 변경 등 다양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고, 원재료 구성·배합비 등은 제품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기술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변경 전·후 함량을 공개할 경우 영업비밀 및 기술자료가 노출되고 연

구개발·제품 개선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식품 제조·수입업체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인 점을 고려할 때 변경내역의 상시 관리·공개에 따른 인력·시스템 구축 등의 부담이 크고, 수입식품은 해외 제조사의 원재료 함량 변경을 국내 수입업자가 적시에 파악하기 어려운 등 업종·업체별 이행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 대상이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어 상당수 사업자는 동 시스템을 통한 공개가 어려우므로, 현행 제도와 중복, 영업비밀 보호 및 사업자의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한국주류산업협회:

-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내용량 축소를 방지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원재료·원료 함량 변경은 내용량 감소와 성격이 다르므로 주류의 제조 특성, 제조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 수입제품의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변경까지 공개할 경우 정보제공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내용량 감소는 현행 식약처 및 공정위 제도를 통해 이미 관리되고 있으므로, 현행 제도의 운영성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추가 입법 필요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3

8) 식품의 내용량을 변경(감소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제품의 내용량 주위에 변경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변경 전의 내용량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단위가격(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이 상승하지 않은 경우

나) 내용량 변경(감소)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부터 제3호의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의 축산물 가공업 및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식품 등의 경우

라)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단,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 중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은 제외한다)의 경우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별표 15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에 조리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식품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집단급식소에 급식용도로 납품되는 식품의 경우

(예시) 내용량 00g(내용량 변경 제품, 00g→00g 또는 00% 감소), 내용량 00g(이전 내용량 00g) 등

[참고 2]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 행위 지정 고시」 별표1·2
--------	---------------------------------

[별표1] 용량 등 변경 사실 미고지 행위 금지 대상 품목 및 식품유형

분 류	품 목	분 류	품 목	분 류	식품유형
가공 식품	햄 류	가공 식품	캔디류	가공 식품	땅콩
	우 유		빙과류		견과류가공품
	설 탕		아이스크림류		곡류가공품
	커피(액상제외)		초콜릿류		과채가공품
	치 즈		초코파이(상자)		건면
	식용유		잼류		유탕면
	참기름		베이컨류		카레(커리)
	마요네즈		소세지류		고춧가루
	간 장		만두류(냉동)		물엿
	맛 살		젓 갈		복합조미식품
	식 초		액 젓		가공두유
	복합조미식품		차류(액상제외)		혼합음료
	식 염		과·채음료		탄산수
	참치캔		탄산음료		가공유
	라 면		코코아		김치
	분 유		식물성 크림(커피용)		즉석섭취식품
	유산균발효음료		마카로니		즉석조리식품
	고추장		스파게티		영·유아용 이유식
	된 장		버터류		
	과·채쥬스		마가린류		
	소스류(액상)		벌 꿀		
	소스류(액상제외)		빵가루		
	케 찹		빵 류		
	청국장		시리얼		
	밀가루		식용기름		
	어 묵		와인류		
	국 수		생선통조림		
	두 부		생 수		
	조미김		주 류		
	과 자		드레싱		
	껌		건포류(중량단위)		

분 류	품 목	분 류	품 목
일용 잡화 및 생활 용품	랩		키친타월
	호 일		부탄가스
	화장지(롤)		살균제
	분말세제		살충제
	섬유유연제		탈취제
	종이기저귀		습기제거제
	생리대		구강청결제
	세면비누(고형)		손세정제
	삼 푸		바디워시
	린 스		염색약
	주방세제(액상)		로션
	칫 솔		선크림
	치 약		립밤
	티슈(상자)		마스크
	위생백		반창고
	가루비누		물티슈
	세탁비누(고형)		면도날
	세탁비누(액상)		건전지
	합성세제(액상)		반려동물 사료
	고무장갑		

[별표2] 용량 등 변경 사실 미고지 행위 금지 대상 품목 및 식품유형

1. 위반행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

- 포장지를 변경하더라도 내용물이 동일하면 동일한 물품에 해당
- 용량 등과 가격을 함께 조정하여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변하지 않는 변경 행위는 제외
-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는 제외

2. 고지방법

가. 사업자는 상품의 용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 사항과 변경 후 사항을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단, 고지기간 중 해당 상품의 판매가 종료되거나, 용량 등이 재차 변경된 경우에는 조기에 고지를 종료할 수 있다.

- (1)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
- (2)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 (3)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나. 위 가.에 따른 고지기간은 용량 등이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으로 한다.

< 예 시 >

포장 표시	"100g → 90g", "100ml → 90ml" 등	
홈페이지 게시	제품 용량 리뉴얼 안내 아몬드 일부제품의 용량이 변경 중입니다 리뉴얼 제품 120g 허니버터아몬드 130g / 와사비맛아몬드 130g / 군촉수수맛아몬드 130g 마늘빵아몬드 130g / 청양마요아몬드 130g / 떡볶이맛아몬드 130g 블루맛아몬드 130g 190g 허니버터아몬드 210g / 와사비맛아몬드 210g / 군촉수수맛아몬드 210g 마늘빵아몬드 210g / 카라멜솔리드아몬드 210g / 감맛아몬드 210g 청양마요 아몬드 210g / 떡볶이맛아몬드 210g / 블루맛아몬드 210g NEW	용량 변경 안내 2023년 10월 1일부터 우유 함유도가 인상되었습니다. 2013년 함유가격연동제 도입 이후 두번째로 큰 규모로써 이에 따라 자사에서도 부득이하게 용량 조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200 mL 1,000 mL — — 변경 180 mL 900 mL 고객님의 더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00 유령은 맛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이 고객님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판매장소 게시	제품의 용량이 줄어들어 실질 가격이 상승했다는 안내문 게시	